

유렉스(Eurex)연계선물거래계좌설정 약관 신규조문대비표(2023.10.30 개정)

현 행	개 정(안)	비고
<p>제16조(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)</p> <p>회사는 천재지변,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(거래의 집행 등)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<p>제16조(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)</p> <p>회사는 천재지변,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(거래의 집행 등)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	<p>회사의 면책범위 수정</p>
<p>제23조(관할법원)</p> <p>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</p>	<p>제23조(관할법원)</p> <p>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[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]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</p>